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12. 1.] [환경부훈령 제1568호, 2022. 12. 1.,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폐기물과), 044-201-74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별표 1 제1호의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1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자동화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하여 별표1 제1호에 따른 품목별로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시설 및 운영여건의 제한 등으로 인해 별표 1 제1호에 따른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품목의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는 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거방침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수거용기의 설치·관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품목·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배출에 적합한 전용봉투, 유리병 전용봉투, 전용그물망 등 지역여건에 알맞은 통합 전용용기를 선택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및 수거량 확보 등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제도(무인회수기를 포함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 또는 통합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재활용품의 파손 우려가 없고 위생적인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운반 시(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포함) 재활용품 간 혼합, 오염 등을 유발하는 압축·압착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로 정기수거일을 지정하거나, 품목별 전용 수거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 재활용품의 혼합,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종량제 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차량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운반하는 차량을 혼용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 종량제 쓰레기와 재활용가능자원을 함께 적재할 경우 구획 구분이 가능하거나, 동일한 차량으로 일반 종량제 쓰레기만을 수거·운반하고 청소·세척 등으로 이물질 제거한 후 재활용가능자원만을 별도 수거·운반할 경우 차량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간이보관장, 분리수거용기 설치지역 등 분리배출 장소 또는 통합배출 장소를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선별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가정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에서의 수거·운반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의 수거·운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선별·처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형광등, 전자제품, 전지류에 대하여 수거·선별 후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에서 수거되는 물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포장재(전지류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군수·구

청장과 협력하여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수거된 제품·포장재를 함께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분리수거실태의 점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조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별표 3의 점검표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재활용여건과 행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전체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건물·토지 면적, 폐기물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특별히 점검하기 위한 폐기물배출자(이하 "특별점검대상 배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법 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법 제28조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선별·처리과정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장비의 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 재활용기반시설의 광역화를 통하여 재활용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의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주민참여 촉진)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분리배출 방법 위반 단속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법 제41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수량 이상의 재활용가능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매립·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보고·공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리수거한 수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 ③ 분리수거량은 집하선별장에서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선별된 상태의 중량기준으로 조사하되, 미선별 상태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매년 4월말까지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 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세부품목별 수량을 연간 2회 이상 계절을 달리하여 표본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을 직접 민간사업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를 위탁하는 토지, 건물 또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매년 분리수거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68호,2022.1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p>※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p>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p>※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p>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p>※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 <p>※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물로 행군 후 반납</p>
	· 기타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법제처	5	<p>※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부착된 열전도판,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p>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p>※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p>
라.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p>※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p> <p>※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p>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p>※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p> <p>※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p>
법제처	6	<p>※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비령정비센터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p>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
다.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 ·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글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 법제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7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p>※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p> <p>※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p> <p>※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p>
<p>아. 발포 합성수지</p>	<p>· 스티로폼 완충재</p>	<p>-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p> <p>-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p> <p>-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p> <p>※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p> <p>※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p>
<p>자. 의류 및 원단류</p>	<p>· 면의류</p> <p>· 기타 의류</p> <p>· 식물성 섬유(면 마 등)</p> <p>·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p> <p>·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p> <p>· 기타 합성섬유류</p>	<p>-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p>
<p>법제처 차. 전지류</p>	<p>· 수은전지, 산화은전지,</p>	<p>-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p>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니켈 ·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 · 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분	품목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금속캔	· 철캔, 알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수지류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 · 트레이류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 트레이류 · 기타 플라스틱류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I)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 책, 신문지, 상자 등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 철판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합성수지류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자류	· 수은, 망간전지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 소형가전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 형광등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법제처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4.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나.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거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내 리튬 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 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장기, 잔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 폐납산배터리	-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폐식용유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3.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5.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별표 2]

통합배출 전용용기 종류(제6조제3항 관련)

	
<p>재활용 그물망 80리터(원사2mm/700mm×800mm, 그물코25mm×25mm / 조임줄·표찰부착), 재질 PE, 색상 녹색</p>	<p>재활용 전용봉투 70리터(두께0.04cm/60cm×90cm), 재질 HDPE, 색상 투명색</p>
	
<p>세종시 재활용 전용봉투 50리터(두께0.04cm/58cm×80cm), 재질 HDPE, 색상 옅은하늘(반투명)</p>	<p>충주시 유리병 전용봉투 20리터(두께0.04cm/45cm×65cm), 재질 HDPE, 색상 연분홍색</p>

[별표 3]

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실태점검표
(시·군·구명)

1. 시설 일반현황

시 설 명			용 도				
소 재 지			전화번호				
소 유 자 (관리자)	성명 :						
	주소 :						
폐기물배출량	주기:		(일, 주), 배출량 :		(kg)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량 및 처리량	품목	수집량 (kg/일)	처 리 방 법				현 재 보관량 (kg)
			자가재활용		위탁재활용		
			방법	량 (kg/일)	방법 (위탁업체명)	량 (kg/일)	

2. 주요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 재활가능자원 분리수집 장소, 용기 확보여부 및 설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수집장소 및 품목별용기 확보 여부 ○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 위치의 적정 여부 ○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의 규모 적정 여부 ○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에서의 재활용품 보관의 적정 여부 <p>※ 1. 용기에 배출된 재활용품이나 선별, 분리된 재활용 품이 무단방치 등으로 폐기물화 되거나 품질이 악화 되는지 여부 등 확인 2. 형광등 분리수집·보관을 위한 장소 및 용기 확보 및 적정성 여부 확인</p>	

[별지 제1호서식]

00년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 보고
(시·도명)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시설·장비확충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차량

구 분	재활용가능자원 전담차량	일반쓰레기와 병행수거
계	대	대
시군구명	대	대

분리보관용기 설치현황

구 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계				
시군구명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용 용기 제작현황(단독, 공동주택, 상가지역등)

구 분	비닐포대	바구니	그물망	기타용기	미제작
계					
시군구명					

집하선별장·간이보관장 현황

- 총괄

구 분	집하선별장(시군구단위)		간이보관장(읍면동단위)		간이보관소 (개소수)
	개소수	부지면적(평)	개소수	부지면적(평)	
계					
시군구명					

- 자동선별장(시군구 집하선별장중 캔·플라스틱 등 자동선별기와 컨베이어시스템이 설치된 곳)

구분	개소수	시설면적 (평)	처리물량 (연/톤)	설치주체 (민간/직영)	운영주체 (민간/직영)
계					
시군구명					

- 부대장비

구분	선별기	압축기	계량대	감용기	상차기	파쇄기	기타
계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시군구명	대	대	대	대	대	대	대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체계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주체

구분	전지역 직영	일부지역 직영 또는 민간대행	전지역 민간대행
계			
시군구명			

 분리배출기준

구분	구분	2종	3종	4종	5종이상	미분류	기타
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 등						
시군구명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 등						

※ 미분류는 모든 재활용가능자원을 함께 배출하는 경우임

 분리수거품목 추가지정품목

시군구명	품목명

구 분	구 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계	대면수거			
	문전수거			
	거점수거			
	대면+거점수거			
시군구명	대면수거			
	문전수거			
	거점수거			
	대면+거점수거			

 수집·운반방법(번호 기입)

구 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계			
시군구명			

- ① 2종 분류 운반(유리병, 기타 재활용품, 또는 폐지와 기타 재활용품등)
- ② 3종 분류 운반(폐지·유리병·기타 재활용품)
- ③ 4종이상 품목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 ④ 품목별 정기수거일(요일) 지정·수거
- ⑤ 혼합하여 수집·운반, ⑥ 기타

 수거주기

구 분	구 분	주1회	2회	3회	매일	격주	기타
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시군구명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3. 폐기물배출자 분리수거실태 점검실적

 점검실적 개요

구 분	점검 대상 (개소)	위반 시설 (개소)	위 반 내 역					조치내역(개소)		
			분리수집 장소·용기 미확보	재활용품 분리배출·보관등 부적정	재활용품 처리 부적정	분리배출 안내·계도 미실시	기타	현장 계도	이행 명령	과태료 부과
계			건	건	건	건	건			
시·군·구명			건	건	건	건	건			

- 작성방법 1) 위반시설은 위반내역이 1건이라도 있는 시설수를 기재
 2) 위반내역 건수의 합계와 조치내역 건수의 합계는 동일하게 기재

□ 특별점검대상 배출자 현황

구 분		배출자 명	대표자 (또는 관리자)	주소	연락처	점검 횟수 (회/년)
번호	시·군·구					
1						
2						
⋮	⋮	⋮	⋮	⋮	⋮	⋮
⋮	⋮	⋮	⋮	⋮	⋮	⋮

4. 재활용가능자원 등 교환·판매실적(민간단체 위탁 포함)

□ 재활용센터·재활용제품 판매장 설치·운영

구 분	재활용센터※		재활용제품 판매장		알뜰교환시장	
	개소수	교환판매건수 (점)	개소수	연간판매액 (천원)	개최 회수	운영실적 (점)
계						
시군구명						

※) 가전·가구등 중고물품 재활용센터를 의미(재활용품 간이보관소 아님)

5. 재활용 홍보실적

구분	신문(회)	방송(회)	프랑카드(매)	유인물(매)	기타
계					
시군구명					

시군구명	제목	시책내용 및 일정	비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23)		지자체 분리수거량(8)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지 자체 직접수거 또는 민간위탁· 대행수거(9)	민간수거 (10)	기타 (11)
전 지 류 (24)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 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 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kg/ 년)			
전자제품 (25)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자동판매기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텔레비전				
	데스크톱형·개인용 컴퓨터(모니터와 본체, 자판, 마우스, 스피커 등 컴퓨터 부분품 또는 부속품)				
	내비게이션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는 제외)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				
	스캐너(휴대용은 제외)				
	빔프로젝트(휴대용은 제외)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기 및 충전기 포함)				
	세탁기(가정용 한정)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단물)기	23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 및 디브이디 플레이어)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제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태양광 패널				
형 광 등(26)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포함)		(개/년)			

다.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단위: 톤, kl/년)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지자체 분리수거량(8)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지 자 체 직 접 수 거 또는 민간위탁· 대행수거(9)	민간수거 (10)
소형가전제품 (27)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톤/년)		

[작성요령]

1. 일반현황

- (1): 지자체명 기재(서울시 강서구, 광주시 광산구 등)
-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처리 담당부서 기재
- (3):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처리 담당자 기재
- (4): 수거처리 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5): 수거처리 담당자의 e-mail 기재
- (6): 지자체 주소 기재

2. 분리수거량(년간 기준)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품목별 자치단체(시·군·구)별 전년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한량 기재 - 단위는 반드시 톤/년 단위로 작성(단, 윤활유는 kl/년으로, 형광등은 개/년으로 작성) - 해당사항(분리수거 실적)이 있는 품목만 기재(실적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수거량

-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
- (8): 지자체에서 직접 분리수거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토록 하여 분리수거한 량과 민간 수거업체에서 분리수거한 량
- (9): 지자체에서 직접 분리수거한 량 또한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토록

하여 분리수거한 량

- (10):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자원중 민간업체에서 분리수거한 량(9호의 분리수거한 량 외의 분리수거한 량)
- (11): 지자체에서 관계기관 협약, 협업 등을 통해 별도로 분리수거한 양
- (12): 종이팩 분리수거량 기재(우유팩 등)(단위는 kg/연간을 사용)
⇒ 책, 박스 등의 종이류는 제외
- (13): 유리병 분리수거량 기재 ⇒ 도자기, 식기류 등은 제외
- (14): 금속캔을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 (15):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 분리수거량 기재
- (16):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를 제외한 PET 분리수거량 기재
- (17): "(15)~(19)"이외의 단일재질로 된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PS 등)
- (18):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 분리수거량 기재
- (19): EPS(발포폴리스티렌) 일명 "스티로폼"의 분리수거량 기재
- (20): PSP(폴리스티렌페이퍼) 일명 "스티로폼"의 분리수거량 기재
- (21): 복합재질의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 PVC+PET 등)

- ※ 뚜껑이나 라벨 등이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로 된 경우는 복합재질이 아니며, (22)에 해당되는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는 제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간단하게 분리 가능한 것은 단일재질로 간주함)
- (22):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과자·라면 봉지류 등)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 (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서 제7호에 해당되는 제품
- (24): 전지를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량으로 분리수거량 기재
(단위는 kg/연간을 사용)
- (25): 전자제품을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 (26): 형광등 분리수거량 기재(단위는 개/연간을 사용)
- (27): 소형가전제품의 분리수거량을 기재하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